

#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님!  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국민의힘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입니다.  
본 의원이 발의한 “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  
- 현행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은 제86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, 청산인을 선임하여 조합의 잔여 재산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등의 청산절차를 거쳐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
- 그러나 '청산절차'에 대한 규정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명시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을 준용

토록 하고 있어 조합 해산 이후 '청산절차'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청산업무의 관리·감독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.

□ 이러한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 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본 건의안은, 정비사업의 ‘미청산’ 문제로 인한 서울시민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▲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·도 조례로 위임하고, ▲ 청산인 선임 의무화 및 청산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, ▲ 청산절차 추진에 있어 고의 지연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, 앞서 말씀드린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